

 금융위원회	<h1>보도자료</h1>			
 한국성장금융 K-Growth	보도	2020. 4. 10.(금) 조간	배포	2020. 4. 9.(목)
책 임 자	금융위 금융혁신과장 윤 병 원(02-2100-2530)	담 당 자	최 민 혁 사무관 (02-2100-2534)	
	한국성장금융 투자운용실장 김 태 수(02-2090-9121)		박 성 호 팀 장 (02-2090-9112)	

제 목 : 핀테크 혁신을 지속·가속화하고, 코로나19로 인한 핀테크기업의 투자유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「핀테크 혁신펀드」를 속도감있게 집행하겠습니다.

- ◆ '19.12월 은행권과 금융유관기관이 참여하여, 핀테크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「**핀테크 혁신펀드**」(4년간 3,000억원) **조성**
- ◆ '20.3.23일 「핀테크 혁신펀드」의 1차년도 子펀드 **위탁운용사가 선정되고, 4월 중 200억 규모의 직접투자도 예정되는 등 본격적인 핀테크 투자 개시**
- ◆ **코로나19** 여파로 여러 핀테크기업들이 투자유치에 애로를 겪을 수 있는 만큼 **속도감 있게 투자집행 예정**

1 | 핀테크 혁신펀드 경과 및 주요내용

- 지난 '19.12.23일 은행권과 금융유관기관이 참여하여, 핀테크 투자의 마중물로서 **핀테크 혁신펀드(母펀드)**가 조성된 바 있습니다.
 - 핀테크 혁신펀드는 KB, NH, 신한, 우리, 하나 등 주요 금융그룹과 BNK, DGB 등 지방은행 및 은행권청년창업재단, 코스콤이 참여한 민간 주도의 펀드로서,
 - 이를 통해 2020년부터 4년간('20~'23) 총 3,000억 원 규모로 혁신적 핀테크기업* 등에 집중 투자하게 됩니다.

* 「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('19.10.4)」에 따른 핀테크기업(별첨)

일자	경과
'19.12.23	○ 핀테크 혁신펀드 조성 완료 - KB은행, NH은행, 신한은행, 우리은행, 하나은행, 부산은행, 경남은행, 대구은행, 은행권청년창업재단, 코스콤 등 참여
'19.12.30	○ 블라인드 자펀드, 프로젝트 자펀드 위탁운용사 선정계획 공고
'20.3.23	○ 블라인드 자펀드 위탁운용사 2개사 선정 (한국투자파트너스, KB인베스트먼트)
'20년 중 계획	○ 1차년도 총 480억원 이상 블라인드 자펀드 결성·투자 ○ 1차년도 총 375억원 이상 직접투자 및 프로젝트 자펀드 결성·투자

□ 핀테크 혁신펀드는 창업초기부터 스케일업까지 성장단계별 맞춤형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며, 시장추이를 보아 필요시 母펀드의 운용 규모를 확대할 예정입니다.

① [성장단계별 투자] 창업초기 핀테크 스타트업 투자와 초기 이후 스케일업·해외진출 지원 투자로 구분(각 1,500억원씩)

- (창업 5년 이내 초기) 초기기업 투자·육성에 특화된 위탁운용사를 선정하고, 민간LP 자금과 매칭하여 블라인드 자펀드*를 결성·투자

* (블라인드 펀드) 투자대상기업이 펀드 결성 전에 결정되지 않은 펀드

- (스케일업·해외진출) 민간LP 자금과 매칭하여 프로젝트 자펀드*를 결성·투자하거나 한국성장금융이 민간투자자와 (공동)직접투자

* (프로젝트 펀드) 투자대상기업이 펀드 결성 전에 미리 결정된 펀드

② [운용사] 핀테크 전문운용인력·전담조직 보유여부 등을 선정 심사에 반영하고, 운용사 인센티브*(성과보수 우대 등) 운영

* 핀테크랩 보육기업, 샌드박스 지정기업, 해외진출 기업에 펀드자산의 일정부분 이상을 투자하는 운용사에 성과보수로 성장금융의 초과수익 제공 등

③ [운용규모] 4년간('20~'23) 3,000억 원 규모 /

자금운용 추이, 시장수요 등 보아가며 6년간 5,000억원 확대

※ **창업초기 투자**(블라인드 펀드 방식)는 **480억원 이상**의 자펀드 결성 후 **3년**의 투자기간 중 순차적으로 피투자기업 물색 및 투자를 집행하며, **스케일업·해외 진출 투자**(프로젝트 펀드·직접투자 방식)는 **연내 375억원 이상** 투자

- ① **(창업초기 투자)** '20년 중 총 480억원 이상 자펀드 결성(2개, 3분기 / 1개 이상, 4분기)
⇒ 각 펀드 결성 후 3년간 피투자기업 물색·투자
- ② **(스케일업·해외진출 투자)** '20년 중 375억원 이상 투자

가. 창업초기 투자 ※ 3개 이상 펀드 결성하여 총 480억원 이상 자금 공급

- '20년에는 핀테크 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펀드를 3개 이상(총 480억원 이상 규모) 결성합니다.
 - '20.3.23일 핀테크 혁신펀드의 1차년도 블라인드 자펀드의 위탁 운용사(2개사)가 선정됨에 따라, 3/4분기부터는 본격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.
 - 아울러 엑셀러레이터 또는 해외 핀테크기업 투자에 특화된 위탁운용사를 1개 이상 추가 선정(2/4분기)하여, 4/4분기에는 극초기·해외투자에 특화된 자펀드의 운용도 개시됩니다.

위탁운용사 명	최소결성금액	주요 투자대상
한국투자파트너스	225억원	핀테크기업 / 창업 5년 이내 초기기업 /
KB인베스트먼트	225억원	우수 기술기업(TCB 5등급 이상) / 혁신기업 등
선정 예정	30억원	핀테크분야 극초기 기업 또는 해외 핀테크기업
합 계	480억원 이상	(20.3~4분기 중 운용개시 예정)

나. 스케일업·해외진출 투자 ※ 펀드 결성 또는 직접투자하여 총 375억원 이상 자금 공급

- '20년에는 성장단계의 핀테크기업에 총 375억원 이상의 자금이 공급*됩니다.
 - * 프로젝트 자펀드를 결성하여 투자하거나 한국성장금융이 민간투자자(전략적·재무적)와 함께 직접투자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
 - 4월 중 핀테크 3개사(빅데이터, 블록체인, 해외 소재 금융플랫폼)*에 대해 민간투자자와 함께 총 2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최초로 집행하며,
 - * 피투자기업 동의시 한국성장금융이 별도 발표 예정
 - 금년 중 최소 175억원 이상의 성장자금이 추가로 공급될 예정입니다.

- “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통한 핀테크 혁신의 지원”이라는 핀테크 혁신펀드의 조성 목적에 따라, 다양한 분야의 혁신적 핀테크 기업을 발굴·투자함으로써 핀테크 혁신을 가속화하겠습니다.
 - 또한,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핀테크기업이 투자유치에 애로를 겪을 수 있는 만큼, 핀테크 혁신펀드 자금이 조속히 시장에 공급 되도록 자펀드 투자 등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겠습니다.
 - 특히, 블라인드 자펀드의 결성 즉시 투자가 집행될 수 있도록 민간LP 자금이 매칭되기 이전이라도,
 - 위탁운용사는 피투자기업의 물색 등 가능한 범위에서의 투자 집행 준비를 병행할 예정입니다.
- 또한, 핀테크기업의 초기사업모델 수립과 안정적 스케일업을 위하여 핀테크기업과 기존 금융회사간의 연계사업을 지원하고, 핀테크기업의 투자 애로사항도 지속 발굴하겠습니다.
 - 핀테크혁신펀드 피투자기업과 펀드 출자 금융회사 간의 협업 뿐 아니라, 투자가 집행되지 않았더라도 매력적인 사업모델을 제안하는 핀테크기업에는 금융회사와의 연계*를 적극 지원하며,
 - * 은행권 핀테크랩 입주, 샌드박스 및 지정대리인 공동신청 등
 - 금융당국, 핀테크 혁신펀드 출자기관 및 피투자기업과의 주기적 간담회를 통해 투자 등 애로사항, 디지털 규제 등을 지속 발굴·개선토록 할 예정입니다.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
 prfsc@korea.kr

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

1. 개요

□ 은행권과 금융유관기관이 참여하여, 핀테크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「핀테크 혁신펀드」 조성·운영 ⇨ 핀테크 투자의 마중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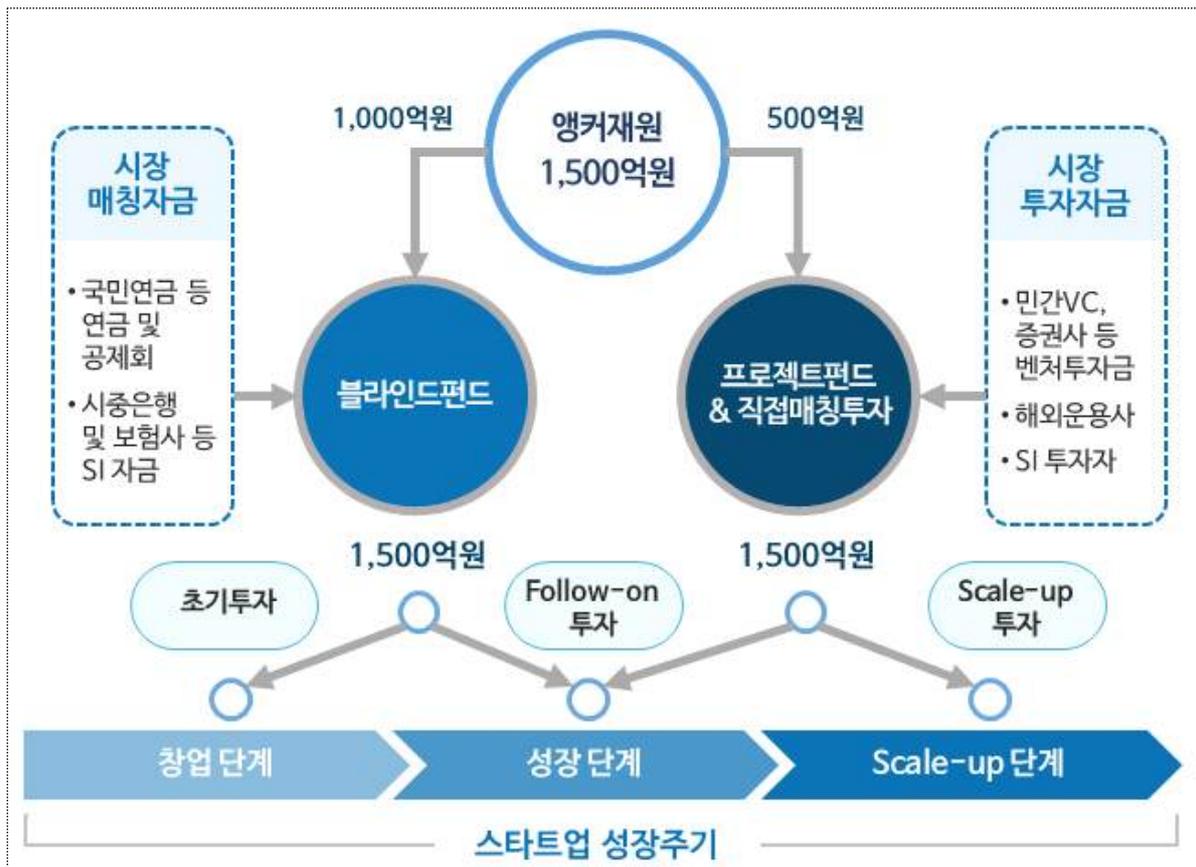
* 은행 등 금융권 1,500억원 + 민간출자 1,500억원 → 3,000억원

① [성장단계별 투자] 창업초기 핀테크 스타트업 투자와 초기 이후 스케일업 및 본격적인 해외진출 투자로 구분(각 1,500억원씩)

② [운영사] 핀테크 전문운영인력·전담조직 보유여부 등을 선정 심사해 반영하고, 운영사 인센티브*(성과보수 우대 등) 운영

* 핀테크랩 보육기업, 샌드박스 지정기업, 해외진출 기업에 펀드자산의 일정부분 이상을 투자하는 운영사에 성과보수로 성장금융의 초과수익 제공 등

③ [운영규모] 자금운용 추이, 시장수요 등을 보아가며 필요시 재원추가 및 펀드규모 확대(4년간 3,000억원 → 6년간 5,000억원)



2. 조성 경과

- ('19) 핀테크 혁신펀드 조성 협의(금융위, 성장금융, 시중은행 등)
- ('19.12.4) 핀테크 혁신펀드 조성 발표(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)
- ('19.12.23) 핀테크혁신(母)펀드 결성 등 앵커재원 조성 완료
- ('19.12.30) 1차년도 자펀드(블라인드펀드, 프로젝트펀드) 조성을 위한 위탁운용사 선정 공고
- ('20.3.23) 블라인드펀드 위탁운용사(2개사)* 선정

* 한국투자파트너스, KB인베스트먼트

< 출자자 구성 및 앵커재원 조성현황 >

출자자		약정금액(억원)	비고
핀테크 혁신 (母)펀드	시중은행 LP (국민/농협/신한/우리/하나은행)	1,000	각 기관 핀테크랩과 연계
	지방은행 및 금융유관기관 LP (은행권청년창업재단/코스콤/ 부산/대구/경남은행)	200	
소계		1,200	-
성장사다리펀드/IBK동반자펀드	출자매칭	300	산업/기업은행
앵커재원 소계 (母펀드 + 매칭모펀드)		1,500	-
민간 매칭재원		1,500	LP참여/공동투자
투자재원 조성액 합계		3,000	-

3. 향후 계획

- ('20) 위탁운용사 통한 자펀드 투자 및 (공동)직접투자 실시*

* 1차년도 총 855억원 투자재원 조성

- (~'23, 향후 4년간) 매년 연말 자펀드 조성 공고 후 차년도부터 자펀드 결성·집행 및 (공동)직접투자 실시(계속)*

* 향후 4년간('20~'23) 매년 750억원 이상 투자재원 조성 예정

※ 「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(19.10.4)」 제2조제2호

“핀테크기업”이란 정보통신기술, 그 밖의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산업 또는 금융소비자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으로서 금융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업이거나 금융회사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하는 기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. 이 경우, 해당 기업이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그 기업이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인 때에는 그 기업이 하는 해당 사업이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4조에 따른 주된 업종인 경우를 말하며, 중소기업 외의 기업인 경우에는 그 기업이 하는 해당 사업이 전체 매출 및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.

- 가.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하는 기업
- 나. 「은행업 감독규정」 제49조 각 호, 「보험업법 시행령」 제59조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, 「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」 제2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하는 기업
- 다. 「전자금융거래법」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
- 라. 「금융혁신지원 특별법」에 따른 혁신금융사업자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지정을 받은 지정대리인
- 마.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신용조회회사 등 금융소비자와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·분석·제공하거나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사업을 하는 기업
- 바. 금융소비자, 그 밖의 이용자들이 금융회사의 개입 없이 자유롭게 금융거래, 그 밖의 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운영하는 사업을 하는 기업

사. 금융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업을 하는 기업

- 1) 금융회사의 업무에 관한 자료처리, 전송프로그램 제공 및 관리
- 2) 금융회사의 업무에 관한 전산시스템 판매 또는 임대
- 3) 금융회사의 업무에 관한 자료를 중계·처리하는 부가통신업무

아. 정보통신기술, 그 밖의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다음의 업종에 관한 사업을 하는 기업

- 1) 전자카드 제조업
- 2)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
- 3)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
- 4)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
- 5)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
- 6) 기타 정보 기술 및 컴퓨터 운영 관련 서비스업
- 7) 자료 처리업
- 8)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
- 9)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
- 10) 1)부터 9)까지 규정 외의 업무로서 기타 정보 서비스업, 기타 분류 안된 금융업,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

자. 가목부터 아목까지 이외의 자로서 다음의 기술을 보유하거나 활용하는 기업

- 1) 인공지능
- 2) 빅데이터의 분석 및 이용
- 3) 사물인터넷
- 4) 그 밖에 1)부터 3)까지와 유사한 기술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기술

카.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, 그 밖의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산업 또는 금융소비자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기업